

JOURNAL OF  
PUBLIC RELATIONS

---

한국PR학회 회원 규정

---

『홍보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

『홍보학연구』 발행 규정

---

『홍보학연구』 연구윤리 규정

---

『홍보학연구』 논문 심사 규정

---

『홍보학연구』 논문 작성 지침(2018)

---

한국PR학회 제22대 집행부 현황

---

『홍보학연구』 논문 공모 안내

---

입회원서

---



## 한국PR학회 회원 규정

**제5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및 대학원에서 홍보 또는 이와 관련된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상인 자
2. 공인된 연구 기관 및 단체에서 홍보와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홍보학 또는 인접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홍보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전문 홍보인
5. 홍보 분야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의 전문 홍보인

**제7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홍보학 또는 인접분야의 석, 박사 학위 과정에 있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홍보 또는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10년 미만이 되는 사람

**제8조(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홍보 관련 기관, 단체 및 연구소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9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홍보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회금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당해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4.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연 회비의 유효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및 회원 자격 상실)**

1. 본 학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단, 외국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본 학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신입 회원 입회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12조(회원의 제명)** 홍보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본 학회의 회칙을 위반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정관에서 일부 발취함)

## 『홍보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PR학회가 발간하는 『홍보학연구』 편집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한국PR학회 정관에 따라 편집위원장, 편집이사과 다수의 편집위원으로 한다.

### 3. 편집위원 자격

편집위원의 선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학계 저명한 학자 중에서 현저한 연구 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로 한다.

### 4. 위원장 및 임원의 위촉 및 임기

-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5. 임무

- 1) 편집위원회는 홍보학 연구의 질적 발전을 위해 우수 연구 논문 발굴 및 『홍보학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와 선정 그리고 편집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투고 논문의 적합성 판단과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편집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3)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 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심사위원에게는 심사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할 수 있다.
- 4) 논문의 심사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 6.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온라인을 통한 의사 결정 또한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 7.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홍보학연구』 발행 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PR학회(이하 본 학회) 제4조에 의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학술지 및 언어)

- ① 본 학회는 국내 학술지로 『홍보학연구』(영문명: Journal of Public Relations)를 발행한다.
- ② 각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3조 (발행 시기)** 『홍보학연구』는 연 4회로 발행하며,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1호 : 3월 31일

2호 : 6월 30일

3호 : 9월 30일

4호 : 12월 31일

### 제4조 (논문 투고 및 게재 심사)

논문에 투고된 논문은 해당 논문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해당 논문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 (판권)

논문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본 학회가 보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 제6조 (배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한국PR학회에 있다.

**제7조 (창간, 증간 및 폐간)**

새로운 논문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논문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 PR학회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홍보학연구』 연구윤리 규정

### 1. 목적

이 규정은 『홍보학연구』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일반적 윤리 원칙

- 1) 학회원은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2) 학회원은 전문가로서 자신의 연구와 활동이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 3) 학회원은 광고, 각종 인쇄출판물 및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 등에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만 기반하여 진술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경력, 자격 및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지 않아야 한다.
- 4) 학회원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 명예 및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인종, 종교, 성, 장애, 연령 및 국적에 따라 타인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 3. 연구자의 윤리 규정

- 1) 연구의 진실성
  - ① 연구자는 연구의 개시, 과정 및 결과 보고 등의 일체의 연구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되게 수행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해야 한다.
  -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
- 2) 연구자의 의무
  -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각종 출판물, 광고 및 강연 등에서 발표할 때에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진술만을 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업적 및 연구 결과등에 관하여 명백한 사실만을 보고해야 한다.
- ③ 연구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 내용을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 본 학회 학회지의 게재 원고 작성 양식에 준하여 명기해야 한다.

### 3)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가 발간된 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①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 등을 허위로 만드는 ‘위조 행위’
- ② 연구 결과물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변조 행위’
- ③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 등을 원저자의 승인이나 인용, 또는 참조 없이도 용하는 ‘표절 행위’

### 4) 연구 내용의 중복 발표 금지

- ①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할 예정인 연구 내용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 ②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의 학회지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할 예정인 연구 내용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서 발표할 수 없다. 단, 연구자는 본 학회 또는 국내·외 타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내용물은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 신청할 수 있다.
- ③ 연구자의 학위 청구 논문 일부 또는 전체를 학회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각주에서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예: “본 논문은 ○○○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 5)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 과정 동안 연구 참여자가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절차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연구 참여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 4. 심사위원 및 편집자의 윤리 규정

### 1) 심사위원의 윤리 규정

- ①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인신공격의 내용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의 제반 사항을 편집장 또는 분야별 상임편집위원 이외의 다른 사람과는 의논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심사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 2) 편집자의 윤리 규정

- ① 편집자는 학회지 및 학회에서 출판되는 해당 간행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② 편집자는 논문 심사의 과정과 참여자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한다.
- ③ 편집자는 논문 심사의 과정 및 결과를 포함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
- ④ 편집자는 출판 과정에서의 오류를 즉시 수정 조치하거나, 시정 사항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규정

### 1)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이 심의 대상자이거나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 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 2) 위원회의 임무 및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사항을 결정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ㄱ. 학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윤리원칙의 제정과 개정 및 해석
  - ㄴ. 윤리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의 재·개정 발의
  - ㄷ. 윤리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대책 수립

- ㄹ. 윤리 규정 위반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 조치 및 제재 의결 요구 건의
- ㅁ.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붙인 사항

### 3) 심의 요청

- ① 학회원 또는 학회와 관련된 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 행위가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심의 요청은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 요청에 관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심의 절차 및 결과 통지

(심의 절차)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요청자, 심의 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면담 조사, 혹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심의 대상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또는 자료 미제출 시에는 추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1회 더 통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 불응 시에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가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에 대한 공정하고도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 대상자 및 심의 요청자에게 심의 결과를 충분히 설명한다. 심의 대상자 또는 심의 요청자는 심의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 대상자 또는 심의 요청자에게 이에 대한 소정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⑤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도 있다.
- ⑥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도 있다.
- ⑦ 위원은 심의 대상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심의 결과 통지) 위원회는 심의 요청 안전에 대한 조사를 심의 요청 3개월 이내에 종료하

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심의 요청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메일로 심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5) 제재의 내용

학회와 관련한 연구윤리 규정 위반 행위가 심의 접수되어 (재)심의 절차를 거쳐 확인된 위반 행위의 결과가 통지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다음의 제재 조치를 일부 또는 전부 가할 수 있다.

- ① 해당 연구물에 대한 학회지 게재 취소
- ② 향후 학회지 게재 불가
- ③ 회원 자격 상실
- ④ 심의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 ⑤ 법률기관 고발

#### 6) 재심의

- ① 심의 대상자 및 심의 요청자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7) 학회는 학회원들에게 본 윤리 규정에 관하여 적어도 연 1회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6. 기타

이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침 및 사회 상규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7.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홍보학연구』 논문심사 규정

### 1. 심사 기준

각 논문의 항목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목적의 명료성
- 2) 분석의 엄밀성
- 3) 연구 방법의 타당성
- 4)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 5) 관련 문헌/자료의 적절성(각주 포함)
- 6) 연구 결과의 의의
- 7) 문장의 독이성
- 8) 논문의 독창성

각 논문의 관련 영역에 대한 연구 기여도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주제의 중요성
- 2) 이론적 기여도
- 3) 방법론적 기여도
- 4) 연구 결과의 실용성

### 2. 심사 절차

-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성격과 주제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선정한다.
- 2) 편집위원으로부터 심사를 요청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규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 결과를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온라인 심사 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 3)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 심사를 받는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것이다.
- 4) 심사 결과는 「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대폭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5) 심사 결과가 「무수정 게재」로 일치할 경우,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하여 최종 결정한다.
- 6) 심사 결과가 「부분수정 후 게재」로 일치할 경우, 투고자의 수정 후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종합 판정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7) 「대폭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을 거쳐 심사 결과 통지일 6개월 이내에 재투고할 수 있고, 해당 심사위원이 재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8) 심사 결과가 「게재 불가」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9) 심사 결과가 게재 가(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와 게재 불가(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양분되는 경우 투고자의 수정 후 게재 불가 판정 심사자를 제외한 2인의 심사위원이 재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단, 「게재 불가」 2인 그리고 「대폭 수정 후 재심사」 2인의 결과를 받은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 10)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 여부는 다음의 기준으로 결정한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최종 판정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다음 호 재심	부분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무수정 게재	게재 불가	부분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다음 호 재심	부분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부분수정 후 게재
무수정 게재	다음 호 재심	다음 호 재심	다음 호 재심
무수정 게재	다음 호 재심	게재 불가	다음 호 재심
무수정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다음 호 재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부분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후 게재	다음 호 재심	다음 호 재심	다음 호 재심
부분수정 후 게재	다음 호 재심	게재 불가	다음 호 재심
부분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다음 호 재심	다음 호 재심	다음 호 재심	다음 호 재심
다음 호 재심	다음 호 재심	게재 불가	다음 호 재심
다음 호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11)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 1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투고자에게 전달한다.

### **3. 편집 방침**

- 1) 논문의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와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학회지의 구성을 위해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2)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4.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홍보학연구』 논문 작성 지침(2018)

- 언론 관련 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2014)의 일부 항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이 규정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그리고 지역언론학연합회가 2014년 공동으로 마련한 ‘언론 관련 학술지 논문 작성 지침(2014)’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규정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 심리학회의 <출판 지침>(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sup>th</sup> ed.)과 한국심리학회에서 출판한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 1. 논문의 구성 요소와 내용

논문은 제목, 저자명과 소속, 국문 초록, 본문, 참고 문헌, 부록, 영문 초록 순으로 구성한다. 편집 용지는 A4, 위아래 여백은 35 mm, 좌우 여백은 각각 30 mm, 글자체는 신명조, 글자 크기는 10, 장평은 95, 자간은 -10, 그리고 줄 간격 160%을 권장한다.

## 1) 제목, 저자명과 소속, 초록

- (1) 논문 제목과 부제목은 진한 글씨로 가운데 정렬한다.
- (2) 저자명은 논문 제목 아래에 쓰고 가운데 정렬한다. 저자 소속은 기관명, 부서명, 직위 순으로 저자명 한 줄 아래, 소괄호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줄을 바꾸어 기재한다.
- (3) 초록은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문단 구분 없이 150 단어(600자) 정도로 작성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으로 구성한다. 들여 쓰기를 하지 않으며 양쪽 정렬한다.
- (4) 초록 한 줄 아래 ‘핵심어(영어 논문의 경우, Keywords)’는 독자가 논문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용어 3 - 5개를 선정하여 나열한다.
- (5) 사사(Acknowledgement), 연구기금 출처, 학위 논문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명시, 저자(들)의 이메일 주소, 교신 저자 등 명시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소에 별표(\*)를 사용해 각주 형태로 기술한다(아래의 예 참조).

소셜미디어 이용정도 및 이용동기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개방형/폐쇄형 소셜미디어 비교\*

홍길동\*\*  
(한국언론연구소 연구위원)

금나래\*\*\*  
(한국대학교 언론학과 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용정도 및 이용동기가 교량적/결속적 사회자본 및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전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SPSS를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개방형 소셜미디어의 경우 사회자본의 강화에, 폐쇄형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경우 결속적 사회자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는 교량적/결속적 사회자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어떤 성격의 매체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소셜미디어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짐을 밝힌 연구로서 이와 관련한 실무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본 연구는 한국대학교 언론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honggildong@hankukresearch.org  
\*\*\* knara@hankuk.ac.kr

## 2) 본문

- (1) 본문의 소제목들은 수준별(상위, 중간, 하위 수준)로 구분하고 ‘1. → 1) → (1)’ 식 표기를 사용한다(아래 예 참조). 소제목들은 진하게 쓰며,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줄 바꿈을 한다. 필요에 따라 제4수준 또는 제5수준 소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
- (2) 새 문단의 시작은 한 글자(두 칸) 들여쓰기를 한다. 단, 블록 인용, 소제목, 표와 그림의 제목 그리고 각주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 (3) 본문에 한자나 외국어가 등장할 경우, 먼저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한다. 이미 한번 사용한 외국어는 이후 한글로만 표기한다.
- (4) 각주는 본문 내용에 대한 부연이 필요할 때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용이나 참고한 문헌의 출처는 각주로 하지 않는다.

### 3) 참고 문헌, 부록, 영문초록

- (1) 참고 문헌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며, 미국 심리학회 출판요강(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을 준용한다. 참고 문헌은 좌측 정렬로 Reference라고 제목을 붙인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참고 문헌 목록의 작성”을 참조한다.
- (2) 분량이나 내용 전개 등의 문제로 본문 내에서 포함하기는 어려우나 연구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은 부록에 제시한다(예, 내용 분석의 틀, 실험 연구에 사용된 자극 재료, 설문 문항, 연구용 프로그램 등). 왼쪽 정렬로 진하게 부록이라고 제목을 붙인다. 부록이 여러 개일 경우 숫자로 번호를 부여하며(예: 부록 1, 부록 2, 부록 3, 부록 4), 각 부록은 별지에 새로 시작한다.
- (3) 영문 초록은 참고 문헌(부록이 없을 경우) 또는 부록 뒤 별지에 작성한다. 영문 초록은 국문 초록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되, 제목의 왼쪽 위에 진하게 ‘Abstract’라고 표기한다(왼쪽 정렬). 저자의 소속은 직위와 기관명(예, Associate Professor, Hankook University)을 표기한다.

## 2. 문헌 인용 표기법

### 1) 일반적 인용 규정

- (1) 저자명이 본문 중에 나올 시, 국내 저자의 연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쓰고 출판 연도를 괄호로 묶어서 쓴다(예 1). 외국 저자명은 우리말식 음독을 쓰고 괄호 안에 원어 이름을 표기한 후 출판 연도를 적는다. 동양 저자명은 모두 쓰지만(예 2), 서양 저자명은 성(姓)만 표기한다(예 3). 외국 저자명을 본문 중에 재차 인용할 경우, 우리말식 음독만 쓰고 원어 이름은 표기하지 않는다(예 2와 예 3). 번역서를 인용할 때에는 원전이 발간된 연도와 번역판 연도를 같이 표기한다(예 4). 동일 저자의 동일 논문을 다른 문단에서 다시 인용할 때는 출판 연도를 쓰지만, 같은 문단 안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출판 연도를 쓰지 않는다.

[예 1] 홍길동(1996)은 ... 주장했다. 홍길동은 또한 ... 주장했다.

[예 2] 마오쩌둥(毛澤東, 1977)은 ... 주장했다. 마오쩌둥은 또한 ... 주장했다.

[예 3] 윌리엄스(Williams, 1990)는 ... 주장했다. 윌리엄스는 또한 ... 주장했다.

[예 4] 밀턴(Milton, 1875/1998)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다.

- (2) 저자명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인용할 내용의 문장 뒤에 저자명(서양저자는 姓만) 과 출판 연도를 쓴다([예 1]).

[예 1] ...를 제시하였다(Honh, 1986). ...을 주장하였다(Williams, 1990).

- (3) 재인용 시, 원전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하고 쌍점(:) 뒤에 재인용한 자료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제시한다([예 1], [예 2]).

[예 1] 홍길동(2000: Jang, 2005 재인용)은 ...  
 [예 2] ...를 주장하였다(Williams, 1979: Hong, 1991 재인용).

- (4) 약 40 단어 이하의 글을 직접 인용할 경우, 직접 인용하는 단어, 어구, 문장을 따옴표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저자명, 출판 연도 그리고 쪽수를 쓴다([예 1]과 [예 2]). 번역서를 인용할 때, 인용 쪽수는 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예 2]). 국내 문헌을 직접 인용할 경우, “(25 쪽)”식으로 표기한다. 외국 문헌 직접 인용의 경우는 “(p. 25)”또는 “(pp. 25-26)”식으로 표시한다.

[예 1] 홍길동(1996)은 “정치는 문화”(25쪽)라고 주장했다  
 [예 2] 윌리엄스(Williams, 1990/2014)는 “문화는 정치”(7쪽)라고 주장했다.

- (5) 다른 저자가 쓴 약 40 단어 이상의 글을 직접 인용할 경우, 별도의 블록을 만들어서 따옴표 없이 제시하고 블록 전체를 들여쓰기 한다. 최종 마침표 뒤에 괄호를 열고 저자명, 년도 그리고 쪽수를 표기한다.

**2) 여러 저자의 단일 연구 인용**

- (1)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를 본문 중에 인용할 경우,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그 연구를 인용할 때마다 두 저자명을 모두 기재한다([예 1] 과 [예 2]). 문장 끝에 괄호를 사용하여 인용할 경우, 저자명은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예 3]).

[예 1] 홍길동과 장길산(2010)은 ...

[예 2] 윌리엄스와 워싱턴(Williams & Washington, 1990)은 ...

[예 3] ...을 발견했다(Hong & Jang, 2010).

- (2) 셋 이상 여섯 명 미만의 저자가 함께 수행한 연구를 본문에 인용할 경우, 처음 인용할 때만 모든 저자명을 표기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과 'et al.'을 사용하여 표시한다([예 1],[예 2]). 여섯 명 이상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 처음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명 다음에 'et al.'을 기입한다([예 3]).

[예 1] 홍길동, 장길산, 그리고 임격정(2010)은 ... 주장했다. 홍길동 등은 또한 ...

[예 2] ... 발견했다(Hong, Jang, & Lim, 2010). ... 발견했다(Hong et al., 2010).

[예 3] ...을 발견했다(Williams et al., 1990).

### 3) 두 편 이상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 표기 순서

- (1) 한 괄호 안에 두 개 이상의 연구를 인용 표기할 때에는 저자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연구와 연구 사이에는 쌍반점(:)을 기입한다.

[예 1] 여러 연구들(Hong, 1994; Jang, 2000; Washington, 1990; Williams, 1990)에서 ...

- (2) 동일 저자의 연구를 두 편 이상 인용할 경우, 출판 연도순으로 오래된 것부터 배열한다([예 1]). 이때 저자명은 한 번만 기입하고 출판 연도만 쓴다. 출판 연도까지 동일할 경우, 제목의 가나다 순서로 (영문의 경우는 알파벳 순서) 출판 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다르게 제시한다([예 2]).

[예 1] 선행 연구들(Hong & Jang, 1992, 2011, 발간중)에서 ...

[예 2] 최근 연구(Hong, 2010a, 2010b)에서는 ...

### 3. 참고 문헌 목록의 작성

#### 1) 일반적 규정

- (1) 참고 문헌은 본문 다음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가운데 정렬, 진하게) 아래 나열하되,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제시한다.
- (2) 참고문헌을 나열할 때 각 문헌의 첫째 줄(行) 세 칸 내어쓰기를 하여 참고문헌 간 구별을 쉽게 한다.
- (3) 문헌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 (4) 제1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가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될 경우, 단독 연구를 공동 연구보다 앞에 배열한다.
- (5) 같은 저자의 문헌은 출판 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의 것이 두 편 이상일 때에는 연도 다음에 ‘a, b, c’등을 넣어 구별한다.
- (6) 저자가 없는 문헌은 문헌 제목을 저자 위치에 두고 그 다음에 발간 연도를 기재한다. 단, 본문에서 ‘Anonymous’라고 인용한 것은 이를 저자명으로 간주한다.
- (7) 저자명은 성(last name)을 적고, 이름(first name)과 가운데 이름(middle name)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생략 표시로 마침표를 찍는다.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맨 마지막 저자 이름 앞에 ‘&’를 사용하여 이름들을 구분한다(예, Smith, A. B., Johnson, C. D., Williams, E. F., & Brown, G. H.).
- (8) 출판 연도는 저작권 표시(©)에 표기된 연도를 가리킨다. 출판 연도는 저자명 뒤의 괄호 안에 표기하되, 출판 예정일 경우에는 출판 연도 자리에 ‘in press’로 표기한다. 출판 연도가 불분명한 문헌은 (*n. d.*)라고 쓴다.

#### 2) 일반적 문헌의 종류별 표기

- (1) **학술 논문.** 학술 논문은 연구자명, 출판 연도, 논문 제목, 정기 간행물명, 권수(volume number), 호수(issue number), 쪽 순으로 표기한다. 논문 제목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주제목과 부제목의 첫 번째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Title of the article: Subtitle of the article). 정기 간행물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되 주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Journal of Communication*). 학술지명 뒤에 권수를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호수는 괄호 안에 표기하되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예 1).

[예 1] Knapp, M., Ellis, D., & Williams, B. (1980).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behavior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terms. *Communication Monographs*, 47(1), 262-278.

- (2) **저서 또는 보고서.** 저서 또는 보고서는 저자명, 편집서 여부, 출판 연도, 저작물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편집서일 경우 저자명 뒤에 ‘(Ed.)’ 또는 ‘(Eds.)’를 표기한다 ([예 1]). 저작물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주제명과 부제목의 첫 번째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Title of the book: Subtitle of the book*). 판회수(edition)는 제목 뒤에 ‘(2<sup>nd</sup> ed.)’식으로 표기한다. 출판사가 위치한 도시와 나라 이름 (미국의 경우, 주) 그리고 출판사명을 표기한다. 쌍점(:)으로 출판사명을 구분한다. 보고서는 보고서 일련번호를 보고서 제목 뒤 괄호 안에 기재한다([예5]).

[예 1] Burgoon, J. K., Bowers, J. W., & Woodall, W. G. (Eds.) (1986). *Nonverbal communication: The unspoken dialogue*. New York, NY: Harper & Row.

[예 5]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82). *Television and behavior: Ten year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the eighties* (DHHS Publication No. ADM 82-1195).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3) **편집서나 저서에 포함된 단일 논문.** 단행본으로 발간된 서적에 포함된 문헌을 인용했을 경우, 인용한 장(章)의 저자명, 출판 연도, 장의 제목, 편집자명, (편), 편집서명, 해당 쪽수, 출판지, 출판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장의 제목은 학술지명 표기에 따르고 편집서명은 저서 표기에 따른다. 이때 편집자명 앞에 ‘In’을 쓰고 이름(first name)과 가운데 이름(middle name)의 첫 글자를 쓰고 성(last name)을 기재한다([예 1]). 마지막 편집자의 성 뒤에 바로 ‘(Ed.)’ 또는 ‘(Eds.)’를 쓴다.

[예 2] Berger, C. R. (1987). Communicating under uncertainty. In M. E. Roloff & G. R. Miller (Eds.), *Interpersonal processes: New directions in communication research* (pp. 39-62). Newbury Park, CA: Sage.

- (4) **번역서와 편역서.** 번역서 또는 편역서는 원저자, 원저의 출판 연도, 원저의 제목과 출판본, 역자, (Trans.), 번역서의 출판 연도, 번역서의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역자명 뒤에 ‘(Trans)’ 를 표기하여 역서임을 표시한다(예 1). 출판사 명뒤에는 원서가 출간된 연도를 표기한다.

[예 1] Laplace, P. S. (1951). *A philosophical essay of probabilities* (F. W. Truscott & F. L. Emory, Trans.). New York, NY: Dover. (Original work published 1814).

- (5) **학술대회 발표 논문.**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발표자명, 발표 연도 및 월, 발표 논문 제목, 학술발표회명, 발표 도시 순으로 표기한다(예 1). 발표논문 제목은 저서 또는 보고서 제목 표기 방식을 따른다. 발표 장소는 발표 도시와 함께 구체적 발표 장소도 표기할 수 있다.

[예 1] Presenter, A. A. (Year, Month). *Title of paper or poster*.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Organization Name, Location.

- (6) **학위 논문.** 학위 논문은 저자명, 학위 수여 연도, 학위 논문 제목, 학위명, 학위 수여 대학 순으로 적는다. 그리고 학위 수여 대학명 뒤에는 국가명(미국은 주명)을 표기한다. 학위 논문 제목은 저서 제목 표기 방식을 따른다.

[예 1] Ryerson, J. F. (1983). *Effective management training: Two mode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larke College of Technology, Potsdam, NY.

- (7) **신문 잡지 뉴스레터 기사.** 신문, 잡지, 뉴스레터 등은 출판 일자가 분명할 경우, 저자명 뒤의 괄호 안에 출판 년, 월, 일을 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출판 연도와 월만 표기하거나 또는 출판 연도와 계절을 표기한다. 신문 기사의 경우, 기사 게재 면을 표기한다. 기사가 여러 면에 걸쳐 나뉘어 실린 경우는 기사가 실린 해당 면 모두를 기입한다(예 3). 신문 사설이나 일반 기사가 쓴 신문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하고, 신문에서 인용한 내용이



독자나 특정인의 기고라면 기고자의 이름을 표기한다. 익명의 기고일 경우, 기사의 제목 두 세 단어로 기사 작성자를 대신한다.

[예 1] Schwarz, J. (1993, 9, 30). Obesity affects economic and social status. *The Washington Post*, pp. A1, A4.

### 3) 온라인 자료 표기

- (1) **정기 간행물.** 연구 제목 뒤에 출처 형태를 대괄호([ ])로 묶는다. 출처 형태는 다음에 제시한 표기 방식 중 하나를 따른다: [전자매체본], [On-Line], [Electronic version]. 그 뒤에 바로 출처명, 권수, 호수를 기입한 뒤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를 적는다. URL 앞에는 “Retrieved from”이라고 적는다([예 1]).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정기 간행물 문서일 경우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표기하고 게시 주소는 기재하지 않는다. 인쇄본 없이 온라인상에서만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의 경우처럼 권 및 호수 기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간행물명과 URL만을 제시한다.

[예 1] Duh, E. (2014). Exploring the impracticability of press freedom during a political transition [On-Line]. *Online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Media Technologies*, 4, 1-26. Retrieved from <http://www.ojcm.net/articles/41/411.pdf>

- (2) **비정기 간행물.** 작성자나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제목을 저자명으로 간주하여 해당 참고문헌 목록 란에 제시한다.

[예 1] GVU's 8th WWW user survey. (*n.d.*). Retrieved from <http://www.cc.gatech.edu/gvu/user-surveys-1997-10>

- (3) **연구보고서 및 세미나/심포지엄 자료.** 기관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처럼 문서 제공자(호스트 기관)와 문서 작성자가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 기관명을 먼저 기입하고 웹 사이트 주소를 표기한다([예 1]). 만일 문서 작성자를 먼저 쓸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문서가 게재(upload)된 연도와 논문 제목을 기입한 후 괄호 안에 연구보고서 이름을 표기한다).

[예 1] Korean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4). How to Improve right for children privacy. Retrieved from <https://www.kisa.or.kr/public/library/reportList.jsp>

- (4) 기타 전자 매체 자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쓴다(예 1). 온라인상에서 읽은 일간지 기사는 기사 작성자를 쓰고, 괄호 안에 기사 작성일을 년, 월, 일로 표기한다(예 2).

[예 2] Kang, H. (2014, 3, 25). What are we now. <Hankuknews>. Retrieved from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40>

- (5) 영상물. 출처는 제목 옆에 대괄호([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예, [CD-ROM], [Computer Software], [Movie], [TV drama] [Video]). 영화는 제작사 소재 도시와 제작사 명을, TV 프로그램은 방영 지역과 방송사명을, 비디오테이프는 출시 회사 주소지를 적는다. 이들 매체의 인용은 감독 (또는 제작자)의 이름으로 표기한다.

[예 1] Jeong, J. (2014). <Do the Jump> [Movie]. Seoul: Nun Entertainment.

#### 4) 법률 자료의 표기

- (1) 판례(Court Decisions). ‘사건 이름 vs. 이름, 공개된 사건이 제시된 책의 권과 페이지, (법정, 판례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1], [예 2]). 판례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판례명(연도)’ 혹은 ‘(판례명, 연도)’식으로 표기하며, 판례명은 이탤릭체로 한다([예 3], [예 4]).

[예 1]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E.D. Wis. 1972).

[예 2]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D. Kan. 1981), *aff'd*, 727 F.2d 888(10th Cir. 1984).

[예 3] *Lessard v. Schmidt*(1972) 또는 (*Lessard v. Schmidt*, 1972)

[예 4] *Durflinger v. Artiles*(1981/1984) 또는 (*Durflinger v. Artiles*, 1981/1984)

- (2) **법령(Statutes)**. ‘법률명, 권 출처 § 절 번호(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1], [예 2]). 법령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법률명(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3], [예 4]).

[예 1] Mental Health Systems Act, 42 U.S.C. § 9401 (1988).

[예 2] FTC Credit Practices Rule, 16 C.F.R. § 444 (1991).

[예 3]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예 4] FTC Credit Practices Rule (1991)

- (3) **입법자료(증언과 청문회, 법안과 결의안, 보고서와 문서 등)**. 증언과 청문회의 경우, ‘제목, xxx Cong.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1]). 법안과 결의안의 경우는 ‘xx. Res. xx, xxx Cong., 출처 페이지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2]). 보고서와 문서의 경우, ‘xx. Rep. No. xx-xxx (연도)’로 표기한다([예 3]).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제목 (연도)’또는(‘제목, 연도)’식으로 표기한다([예 4], [예 5], [예 6]).

[예 1] RU486: The import ban and its effect on medical research, 101st Cong., 2d Sess. 35 (1990) (testimony of Ronald Chesemore).

[예 2] S. 5936, 102d Cong., 2d Sess. § 4(1992).

[예 3] S. Rep. No. 102-114, at 7 (1991).

[예 4] RU486: The Import Ban (1990) 또는 (RU486: The Import Ban, 1990)

[예 5] Senate Resolution 107 (1993) 또는 (S. Res. 107)

[예 6] Senate Report No. 102-114 (1991) 또는 (S. Rep. No. 102-114, 1991)

#### 4. 숫자와 통계치의 표기

##### 1) 일반적 규정

- (1) 모집단과 관련된 수치(parameters)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리스 문자는 기울여 쓰지 않는다([예 1]). 그러나 표본과 관련된 통계치(statistics)를 위해 사용하는 기호들은 모두 기울여 쓰기를 한다([예 2]). 전체 표본 수를 가리킬 때에는 이탤릭체로  $N$ 을 쓰고, 전체 표본 중 하위 집단의 표본 수를 지칭할 때에는 이탤릭체로  $n$ 을 쓴다([예 3]).

[예 1]  $\sigma, \alpha, \beta_i, \chi^2, \eta^2$

[예 2]  $N, Mx, df, SSE, MSE, t, F$

[예 3]  $N = 135, n = 30$

- (2) 수치가 1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는 통계치에 대해서는 소수점 앞에 영(0)을 덧붙인다(예, 0.23 cm; 0.48 s;  $M = 0.89$ ;  $SD = 0.29$ ;  $B = 0.25$ ). 그러나 수치가 1 이하 또는 -1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을 경우(예, 상관계수, 확률,  $R^2$ , 표준 회귀계수), 소수점 앞에 영(0)을 붙이지 않는다.
- (3) 통계 추정치(예, 표본평균, 회귀계수 등)를 보고할 때는 추정치의 변동성과 관련된 수치들(예, 표본편차, 표집오차 등)을 보고한다(예,  $M = 3.87, SD = 0.92; B = 6.25, SE = 0.98$ ).
- (4) 추론통계 검증 시(예,  $t$  검증,  $F$  검증,  $\chi^2$  검증 등), 자유도와 정확한  $p$  수치를 함께 보고한다. 이때, 정확한  $p$  수치는 소수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까지 보고한다. 단, .001 보다 낮은  $p$  수치는  $p < .001$ 로 표시한다.  $p < .05$  나  $p < .01$ 은 표나 그림에만 한정하여 사용한다.  $p$  수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계치는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수까지만 반올림하여 표기한다.

[예 1]  $r(30) = .45, p = .031$ .

[예 2]  $t(393) = 1.34, p = .180$ .

[예 3]  $F(1, 394) = 6.82, \text{부분 } \eta^2 = .04, p = .009$ .

[예 4]  $\chi^2(8) = 8.92, p = .350$ .

[예 5] \* $p < .05$ . \*\* $p < .01$ . \*\*\* $p < .001$ .

## 5. 표와 그림의 표기

- (1) 표와 그림은 별도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제목을 붙인다. 표 제목은 해당 표 위에 위치시키는 반면, 그림 제목은 해당 그림 아래에 위치시킨다. 제목은 첫 문자 및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1] Table 1. Regression result

[예 2] Figure 1. Research model

- (2)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꺾쇠(< >)안에 표기한다(예, <Table 1> 참조).
- (3) 책 또는 논문에서 표나 그림을 인용했을 경우, 출처를 아래의 예시에 따라 표기한다([예 1]: 국내 저서 인용; [예 2]: 외국 저서 인용; [예 3]: 국내 논문 인용; [예 4]: 외국 논문 인용). 책과 논문의 표기는 참고 문헌 목록에서의 표기와 동일하게 한다. 인용된 쪽수를 표기하고 사용허락과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시한다.

[예 1] Resource: Author, A. A. (1982). Title of book . New York, NY: Publisher, p.103. All right reserved.

- (4)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일반주 (주:), 개별주 (a), b), c), 확률주 ( $*p < .05$ .  $**p < .01$ .  $***p < .001$ .), 출처 순으로 배열한다. 각 유형의 주는 들여쓰기 없이 표 아래 새로운 줄에서 시작한다.
- (5) 표의 본문에 정보를 제시할 경우, 측정값의 소수점 표기 기준과 단위 등을 통일시켜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소수점 이하 표기는 두 자리를 넘지 않도록 한다.
- (6) 표의 세로 선은 사용하지 않고 가로 선만을 사용한다.

- (7) 분산분석 결과를 표로 제시할 경우, MSE를 제외한 SS와 MS는 생략하되, 효과크기와 유의 확률을 반드시 제시한다(〈Table 1〉 참조). 유의확률(p 수치)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의 내용이 많을 시에는 F 수치에 별표(\*, \*\*, \*\*\*)를 사용하고 표 밑에 확률주를 추가한다.

Table 1. ANOVA analysis results

variables	<i>df</i>	<i>F</i>	$\eta^2$	<i>p</i>
Control(A)	2	3.80	.35	.007
Stress(B) <sup>a</sup>	1	1.54	.09	.113
A X B	2	2.23	.15	.027
S/AB	30	(10.05)		

Note. The numbers in parentheses refer to MSE.

- (8) 회귀분석 표에서는  $B$ (비표준화 회귀계수),  $\beta$ (표준화 회귀계수),  $t$  수치, 유의도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사례 수는 주에 나타내고, 회귀분석 방법(표준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 표의 제목에 들어가게 한다.
- (9) 모수치 추정치를 포함한 표의 경우, 가능하다면 신뢰구간도 함께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신뢰구간은 대괄호( [ ] )를 사용하거나, 각 열에서 하한계(lower limit)와 상한계(upper limit)를 제시하여 보고한다.
- (10) 회귀분석 또는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결과를 보고할 경우, 중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별도의 표로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 한국PR학회 제22대 집행부 현황

학회장	성민정 (중앙대학교)
부회장	조수영 (경희대학교) 황성욱 (부산대학교)
총무이사	김대욱 (인천가톨릭대학교) 김자림 (연세대학교) 홍혜현 (중앙대학교)
연구이사	김효숙 (송실대학교) 유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이희성 (가천대학교) 장정현 (차의과대학교) 정의철 (상지대학교) 정원준 (수원대학교) 정현주(가톨릭관동대학교) 최유진 (동국대학교) 최홍림 (선문대학교) 하진홍 (대구대학교)
기획이사	김상연 (광운대학교) 김성수 (국민대) 김지선 (인천대학교) 김효정 (부산대학교) 박세진 (한양대학교) 윤성훈 (동국대학교) 정혜승 (KT경제경영연구소) 조재희 (서강대학교) 조정열 (숙명여자대학교) 최준혁 (순천향대학교)
회원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민 (경희대학교)

국제이사	박효정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 이수만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산학협력이사	강함수 (에스코토스) 김 석 (프레인) 김은용 (KPR)
홍보학연구 편집위원장	안순태 (이화여자대학교)
홍보학연구 편집이사	김수진 (이화여자대학교)
AJPR 편집위원장	김장열 (콜로라도대학교)
AJPR 편집장	문 빛 (인디애나대학교)
감사	박동진 (한림대학교) 이유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무간사	배규원 (중앙대학교)
편집간사	이하나 (이화여자대학교)

**사단법인 한국PR학회**



## 『홍보학연구』 논문공모 안내

한국PR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인 『홍보학연구』 논문을 공모합니다.

『홍보학연구』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회에 걸쳐 발간됩니다.

투고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학술지 투고 규정에 맞게 원고를 작성하신 후, 매 호 투고 마감일까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kaspr.jams.or.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논문 주제 : PR 관련 주제
2. 원고 분량 : 200자 원고지 100~150매
3. 사용 언어 : 학술지 사용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함
4. 초록 작성 기준 : 국·영문 모두 150단어(600자)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함.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s)로 구성하여야 함.
5. 투고 자격 : 본 학회 회원 및 홍보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단, 해외 소재 대학 및 기관 소속 교수의 단독 투고의 경우, 학회 회원이 아니어도 투고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함)
6. 논문 작성 방법 : 표(Table)와 그림(Figure)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함. 그 외 사항은 본 학회 논문 작성지침을 따름.
7. 논문 제출 방법 : 온라인 심사 시스템(<http://kaspr.jams.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제출]. 논문 투고 시 (1) 저작권 이양(활용)동의서, (2) KCI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별첨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8. 심사 절차 : 학회 편집위원과 외부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 심사 결과는 온라인 심사 시스템에서 확인. 세부 심사 절차는 논문 심사규정 참조.
9. 게재료 : 게재확정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연구비 지원 논문 ₩250,000, 연구비 미지원 논문 ₩150,000)를 납부하여야 함
10. 문의 : 편집간사 이하나([kaspredit@gmail.com](mailto:kaspredit@gmail.com))

## 입회원서

本人은 貴會의 趣旨에 贊同하여 入會하고자 이에 入會願書를 提出합니다.

20 . . . . .

申請人

推薦人(正會員)

\_\_\_\_\_

\_\_\_\_\_

한국PR학회 貴下

\_\_\_\_\_

성명	한글		영자		생년월일	
	한자					
주택 주소			주택 전화 FAX		주민등록 번호	
직장 주소			직장 전화 FAX			

### 학력

기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위

### 경력

기간	근무처	직위

- 끝 -